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3
------	-----

제출년월일 2001. 12. .  
제 출 자 평 창 군 수

## □ 제안이유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중 불합리한 향토학사입사생 선발기준을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함으로써, 입사생 선발의 객관성 확보와 행정신뢰 제고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제9조(선발 및 심의) ② 향토학사 입사생은 제6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성적의 70%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하는데 2이상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의 본인 또는 자녀 : 성적의 20%
2. 평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성적의 10%

##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없음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향토학사 입사생은 제6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성적의 70%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하는데, 2이상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애인의 본인 또는 자녀 : 성적의 20%
2. 평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 성적의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b>제6조(입사신청)</b> 향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향토학사입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생략)</li> <li>3. (생략)</li> <li>4. 기타증명서(국가유공자, <u>생활보호대상자</u>, 등록장애인일 경우)</li> </ol>	<p><b>제6조(입사신청)</b>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현행과 같음)</li> <li>3. (현행과 같음)</li> <li>4.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u></li> </ol>
<p><b>제9조(선발및심의)</b> ① 향토학사 입사생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p> <p>② 향토학사 입사생은 <u>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u>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국가유공자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또는 자녀</u></li> <li>2. <u>평창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u></li> <li>3. <u>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u></li> <li>4. <u>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u></li> </ol>	<p><b>제9조(선발및심의)</b> ① ----- -----</p> <p>② ----- <u>제6조 제1호 규정</u>에 의한 성적의 70%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 -----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하는데 2이상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장애인의 본인 또는 자녀: 성적의 20%</li> <li>2. 평창군 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 성적의 10%</li> </ol> <p style="text-align: right;">&lt;삭제&gt;</p> <p style="text-align: right;">&lt;삭제&gt;</p>

# 관 계 법 령 발 취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 제9조(선발및심의) ①향토학사 입사생 심의는 평창군조정위원회에서 한다.
- ②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또는 자녀
  2. 평창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3.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4.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 ③동점자가 2인 이상일때에는 보호자의 군거주 년수를 감안하여 우선 선발한다.

## 평창군향토학사입사생선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과 소속감을 지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향토학사”라 함은 군수가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
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군수는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 장소, 방법
2. 신청자격
3. 선발기준, 인원, 방법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입사신청자격)** 향토학사 입사신청 대상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평창군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2년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자
2. 보호자의 주소가 평창군으로 되어있지 아니한 자
3. 기타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입사신청)** 향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향토학사입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
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3. 건강진단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병원 발행분)
4. 기타 증명서(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일 경우)

**제7조(선발시기)** 향토학사 입사생은 매년 2월초까지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선발인원)**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인원을 구분·선발하여야 하며, 입사가능한 인원의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1. 남학생 10명, 여학생 10명
2. 신입생 7명, 재학생 13명
3.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직자 발생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
4.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이 없을 때에는 군 지역 출신학생중 향토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한다.

**제9조(선발및심의)** ① 향토학사 입사생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②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자녀, 생활보호대상자, 등록장애인 또는 자녀
  2. 평창관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3.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4.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
- ③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군 거주 연수를 감암하여 우선 선발한다.

제10조(입사권) 향토학사의 입사는 선발된 순위에 의하고, 입사기간은 당해연도 (1년)로 한다.

-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 ① 향토학사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 포기 자로 한다.
- ② 향토학사 규정에 의해 향토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